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2
----------	-------

발의연월일 : 2019. 4. 16.

발의자 : 신창현 · 노웅래 · 위성곤  
윤준호 · 김태년 · 서삼석  
윤일규 · 박정 · 어기구  
심기준 · 전현희 · 김병기  
표창원 · 금태섭 · 윤관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 12.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등).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

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 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p>② ~ ④ (생 략)</p> <p>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u>제1조(시행일) (현행 부칙과 같음)</u></p> <p><u>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u></p>
---	---